[사 건 명] 행심 2016-34

학교폭력에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중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9.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급교체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6. 9. 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이 같은 반 학생 ◎◎◎에게 폭행, 인터넷에서의 심리적 공격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의 조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6. 9. 30. 이 사건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같은 날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처분의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는 위원장 직권으로 일부인용 결정하여 2016. 10. 10. 통보하였으며, 2016. 10. 17. 개최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동의로 그 결정이 추인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조치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학기초부터 피해학생과 자주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때린 적이 있으며, 피해학생이 먼저 청구인을 따돌림하여 나중에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따돌림하였다.

나. 청구인이 페이스북에 피해학생의 사진을 게시하였으나, 이는 피해학생의 승낙에 의한 것이다.

다. 2016. 8. 25. 09:50경 피해학생이 먼저 청구인의 등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고, 화장실에서의 폭행도 먼저 피해학생이 청구인을 폭행해서 발생한 것이다.

라. 그럼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에 대하여 매우 중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조치로 감경해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는 피해학생이 청구인을 먼저 때리거나 따돌림시킨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반 다른 학생들도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페이스북에 사진을 게시하겠다고 말했지만 피해학생이 이를 승낙한 적이 없고, 피해학생이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미루다가 이 사건 조치가 이루어질 무렵에야 비로소 삭제하였다.

다. 2016. 8. 25. 피해학생은 누가 불러서 화장실에 갔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청구인과 가까운 ◆◆◆가 피해학생을 복도로 불러냈고,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갔으며, 화장실에서 말싸움 끝에 청구인이

먼저 피해학생을 폭행하였다.

라. ◇◇중학교 교사들이 청구인에게 피해학생을 괴롭히지 않도록 선도조치하였으나,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은 교사의 관찰과 지도가 용이하지 않은 스포츠 시간이 대부분이므로, 피해학생의 지속적인 피해를 우려해 학급교체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4. 이 사건 조치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 별지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인정된 사실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교사의 면담자료의 기재와 피청구인에 대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중학교 학생으로 학기초부터 서로 다툼이 잦았고, 결국 청구인은 ◆◆◆, ◇◇◇와 함께 피해학생을 따돌림하였으며, 카톡방에서 ◇◇◇와 함께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학생을 힐난하였다.

②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신발을 학교 근처에 있는 풀숲에 버린 적이 있다.

③ 청구인은 페이스북에 피해학생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페이스북에 게시된 사진들이 공개되면 피해학생의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으로써, 피해학생이 그 사진의 게시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페이스북에 게시된 사진의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상당기간 동안 이를 방치함으로써 피해학생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다.

④ 2016. 8. 25.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서로 ‘어깨빵’(어깨로 밀어붙이거나, 치고 지나가는 행동을 가리키는 속어)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었고, 결국 청구인은 화장실에서 ◆◆◆, ◇◇◇와 함께 피해학생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서로 폭행하였다.

⑤ 이 사건 조치가 이루어진 후 청구인에 대한 학급교체가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이 사건 재결시까지 피해학생과 다른 학급에서 학습하고 있다.

(2)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카톡방에서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거나 힐난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피해학생의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였으며, 사소한 몸의 부딪힘을 따진다면서 다른 학생 2명과 함께 피해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조치의 상당성

청구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상당기간 지속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따돌림’하거나 폭행한 점을 감안하면(이 사건 조치 이후 학급교체가 이루어졌고 상당기간 동안 청구인이 새로운 학급에서 학습한 점 역시 반영함), 청구인과 피해학생을 분리하기 위해 청구인에 대하여 학급교체를 한 조치가 상당하고, 아울러 학교폭력의 예방 및 청구인의 선도 · 교육을 위해 특별교육이수를 명한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인다.

5. 결론

이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